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8
----------	------

2020년 3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5.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0. 2. 12.
3. 상정일자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3월 3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 1. 제안이유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중앙부처에서 책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별표로 정했던 항목별 검사·시험 수수료 기준을 관련 상위법령의 수수료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별표를 삭제함(안 제7조 및 별표)
- 나.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조례

시행 전에 검사·시험 의뢰가 접수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함(안 부칙 제1조 및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건환경연구원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동물위생시험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11. 7. ~ 11. 27.) 결과: 의견없음

###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중앙부처에서 책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음.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현재 서울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시험의뢰 수수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조례의 별표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 개정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으로 발의함.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9년 총 9,615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로 총 459백만원을 징수하였음.

#### <검사현황>

구분	계	2019	2018	2017
검사(건)	29,145	9,615	9,608	9,922
수수료(만원)	139,920	45,895	44,866	49,159

- 2019년도 항목별 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식품의약품검사에서 182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가 징수되어, 전체 수수료 수입 중 40%를 차지하고 있음.

<검사항목별 및 수수료 징수 현황>

(단위:만원)

구분	2019	2018	2017	비고
계	45,895	44,866	49,159	
농축산물검사	7,015	6,992	7,953	
수질 및 토양검사	9,268	10,274	11,156	
식품의약품검사	18,224	16,688	17,799	
질병검사	11,370	10,370	10,496	
기타검사	18	542	1,755	

- 개정안에서는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중앙부처에서 책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기준의 통일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17개 시도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포함한 2개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수수료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중앙부처의 관련 기준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참고1)

시도	준용여부	시도	준용여부
서울	미준용	강원	준용
부산	준용	전북	준용
대구	준용	전남	준용
대전	준용	경북	준용
광주	준용	경남	준용
울산	준용	세종	준용
경기	준용	제주	준용
충남	미준용	인천	준용
충북	준용		

- 수수료 징수 및 부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상위법을 준용함으로써 빈번한 조례개정을 피할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검사·시험의뢰 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동물위생시험소법」 등에서 책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참 고 1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관련 조례

시도	조례	내용
서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p>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에 검사·시험이나 용역사업을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1.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 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p>
부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5조제1항	<p>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하려는 자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험 성적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시험등의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한다.</p> <p>1.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수수료</p> <p>2.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의 수수료</p> <p>3.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7, 별표 18의 수수료</p> <p>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수수료</p> <p>5.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수수료</p> <p>6.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수수료</p>
대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3조	<p>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를 재교부받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의 별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3조의 별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제7조의 별표 2와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별표 등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항목은 가장 유사한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p>
대전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3조	<p>①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병성감정 수수료 및 혈청검사 수수료에 따르며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따른다.</p>
광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3조	<p>① 시험 등의 수수료는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관련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 등의 품목은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p>

시도	조례	내용
		수료를 적용한다.
울산	울산광역시 보건 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5조	① 시험 등의 수수료와 성적서 재교부 등 교부수수료, 제품검사합격증지 교부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이외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가장 유사한 시험항목의 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4만원으로 한다.
경기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운영 조례 제4조	②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하며, 레지오넬라균검사의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
충남	충청남도 보건 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①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충북	충청북도 보건 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3조	①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하며, 동 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이에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강원	강원도보건환경 연구원의 시험· 연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① 시험·연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기준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징수한다.
전북	전라북도 보건 환경연구원 검정. 시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① 검정·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의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이에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전남	전라남도 보건 환경에 관한 시험 의뢰 및 검사 조례 제4조	① 시험 수수료와 성적서 재발급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 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하며, 이외 시험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시험성적서 재발급 시 수수료는 건당 1,000원으로 한다.
경북	경상북도 보건 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3조	① 검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료를 적용하되,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이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험성적서 재교부 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① 의뢰인이 시험·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도	조례	내용
	운영 조례 제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li> <li>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li> <li>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li> <li>4.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li> <li>5.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li> </ol>
경남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4조	<p>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와 성적서 재교부 등에 따르는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시험 수수료액표에 따른다.</p>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관리 조례 제22조	<p>① 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시험항목 및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총간소음검사 수수료 및 레지오넬라균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li> <li>2.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제8조제1항</li> <li>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제1항</li> <li>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li> <li>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li> </ol>
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4조	<p>① 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하며 동 규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동 규정의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p>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28
----------	------

제출년월일 : 2020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 1. 제안이유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중앙부처에서 책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별표로 정했던 항목별 검사·시험 수수료 기준을 관련 상위법령의 수수료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별표를 삭제함(안 제7조 및 별표)
- 나.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조례 시행 전에 검사·시험 의뢰가 접수된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함(안 부칙 제1조 및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보건환경연구원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동물위생시험소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11. 7. ~ 11. 27..) 결과: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나.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별표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검사·시험 의뢰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에 검사·시험이나 용역사업을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1. <u>검사·시험의뢰 수수료</u> : <u>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u></p>	<p>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 ----- ----- -----.</p> <p>1. <u>검사·시험의뢰 수수료</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u>시험·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u>시험·검사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u></p>

현행	개정안
<p>2.3. (생략)            ② ~ ④ (생략)  <u>[별표] 검사·시험 수수료 [제7조</u>  <u>제1항제1호 관련]</u>  <u>(표생략)</u></p>	<p><u>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u>  <u>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u>  <u>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u>  <u>하는 수수료</u>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p>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검사·시험 수수료 부과·징수 등은 상위법령 수수료를 준용하여 규정 및 적용하므로 비용발생 없음

### 4. 작성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행정6급 허안숙(02-570-3315)